



팬데믹 이후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방향

손민숙 연구원

요약

주요국들은 팬데믹 이후 원격医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며 일정 부분이라도 원격医료를 도입하고 있는데, 원격医료의 사용 및 개발 수준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남. 원격医료는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격医료의 원활한 도입 및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법률의 선제적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주요국들은 의료접근성 향상 및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의료¹⁾ 도입 및 성장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특히 팬데믹 이후 원격医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임²⁾
 - 원격医료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전체 의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들의 의사 1인당 원격상담 건수, 전체 진료 상담 중 원격상담 실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³⁾
 - 캐나다의 경우 2020년 2분기 기준 초진의 73.7%가 원격으로 이루어졌고, 프랑스에서는 2020년 봉쇄기간 동안 진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상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메디케어상 원격의료 건수가 전년 대비 60배 이상 증가하였음⁴⁾
- OECD 주요국 대부분은 일정 부분이라도 원격医료를 도입하고 있는데, 다만 허용하는 원격医료의 유형이나 급여 지급 체계, 관련 요건, 의료종사자 자격 등 원격医료의 사용 및 지원 수준에서 국가별로 차이를 나타냄⁵⁾
 - 팬데믹 이후 주요국들은 원격의료 요건을 완화하고 실시간 원격상담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표 1> 참조)
 - 한국도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일 당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초진 시 대면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실시간 원격상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료비용과 관련하여서도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원격의료와 대면진료의 의료수가를 동일하게 맞추고, 비용 부담 역시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음(<표 2> 참조)
 - 그 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미국 3개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기술 지원이나 장비, 원격의료 연결에 필요한 보조비용에 대한 추가 보상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원격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나 OECD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함
 2) OECD(2020. 1. 21),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16
 3) OECD(2023. 1. 17),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Telemedicine"
 4) OECD(2023. 1. 20), "The future of telemedicine after COVID-19"
 5) OECD(2023. 1. 20), "The future of telemedicine after COVID-19"

〈표 1〉 OECD 주요국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 정책 변화(2020년 3월 기준)

대면진료만 가능		초진 시 대면진료 필요		실시간(동시) 원격상담의 정부·의무 급여제도 보장 여부		원격환자모니터링서비스의 정부·의무 급여제도 보장 여부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네덜란드,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튀르키예, 미국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헝가리	헝가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체코	체코	잉글랜드	잉글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프랑스	잉글랜드	잉글랜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독일	독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멕시코	일본	일본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라트비아
튀르키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헝가리	스위스	스위스
미국	미국	뉴질랜드	뉴질랜드	한국	한국	헝가리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체코, 잉글랜드,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미국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 체코,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한국	한국	오스트리아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튀르키예		-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주: ○, x, 관련 정책 없음 으로 함
 자료: OECD(2023. 1. 20), "The future of telemedicine after COVID-19"

〈표 2〉 OECD 주요국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 비용 관련 정책 변화

대면진료와 수가 동일 여부		대면진료와 비용 부담 동일 여부		원격의료 관련 보조비용(예: 기술 지원, 장비, 연결) 별도 추가 보상 기능	
전	후	전	후	전	후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노르웨이	노르웨이	헝가리	헝가리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폴란드	한국	한국	아일랜드	아일랜드
미국	미국	체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미국
헝가리	헝가리			코스타리카, 체코, 핀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튀르키예	
한국	한국	미국	미국		
코스타리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라트비아	라트비아	헝가리	헝가리
벨기에	벨기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튀르키예		라트비아	라트비아
라트비아	라트비아			한국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튀르키예					

주: ○, x, 관련 정책 없음 으로 함
 자료: OECD(2023. 1. 20), "The future of telemedicine after COVID-19"

○ 한국에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최근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현재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으나,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 허용 조치를 계기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 중임(〈표 3〉 참조)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의원급을 전제로 초진의 경우 대면진료를 요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강병원의 원안 이후 개정안들은 허용 의료행위의 범위를 진단 및 처방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원격의료의 허용되더라도 처방약의 수령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개정하고, 원격의료의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래 수준의 급여 청구를 허용할 것을 논의 중임

〈표 3〉 최근 의료법 개정안 제안 현황

구분	강병원의원안	최혜영의원안	이종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의안번호	2112756	2112870	2118012	2120760	2121133
제안일자	2021. 9. 30	2021. 10. 18	2022. 11. 1	2023. 3. 20	2023. 4. 4
허용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급 (예외적 병원급)	의원급 (예외적 병원급)	의원급	의원급 (예외적 병원급)
허용 사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부정맥)	격오지, 수용자, 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만성질환, 정신질환, 수술 등 후 관리	격오지, 국외자, 수용자, 군인 등	-	-
초진 허용 여부	재진만 허용	재진만 허용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초진 대면진료 필요	재진만 허용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초진 대면진료 필요
허용 의료행위	원격모니터링 (관찰, 상담만)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관찰 및 상담·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격의료의 원활한 도입 및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법률의 선제적 정비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OECD 13개국 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⁶⁾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며 그 외에도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치료 품질을 향상시키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반면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한 ICT 관련 인프라 확충, 지급 및 결제 메커니즘, 책임에 관한 문제 등 다수의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및 법률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6) OECD(2020. 1. 21),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16